

일반 지침

본 패킷의 1, 2페이지를 읽은 후 3페이지의 신청서를 작성해 주십시오. **이동에 손상을 끼치는 중증 장애가 있는** 뉴욕주 거주자의 경우, 특별 주차증 또는 번호판을 신청할 자격이 있습니다. 이러한 장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본 패킷 3페이지의 신청서 파트 2를 참조하십시오. 영구 또는 일시 장애로 구분하여 주차증이 발급됩니다. 주차증은 **장애가 있는 당사자의 이름으로 발급됩니다**. 운전자나 차량의 등록 소유주여야만 주차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중증 장애 아동은 법적 맹인과 마찬가지로 연령에 상관없이 주차증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1) 주차증 신청 방법:

- (a) 3페이지 신청서의 파트 1을 작성하십시오. **영구 장애인** 경우, 의학박사, 정골의학의, 의사보조(PA), 전문 간호사(Nurse Practitioner), 족부의학의(발 관련 장애용) 또는 검안의(맹인용)에게 본 신청서 양식에서 파트 2의 “영구 장애” 의학 증명 섹션을 작성하도록 한 후 **양식을 돌려 받으십시오**. 보조 기구의 사용이 필요한 **일시 장애**의 경우, 의학 박사 또는 정골의학의에게 본 신청서 양식에서 파트 2의 “일시 장애” 의학 증명 섹션을 작성하도록 한 후 **양식을 돌려 받으십시오**. 참고: 영구 장애의 경우,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명확한 장애이거나(예: 다리의 절단) **또는 이미 중증 장애인용 번호판을 소지하고** 있다면 발급 기관에서 의학 증명을 면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b) 반드시 작성한 신청서를 지참하고 거주하는 시, 타운 또는 마을의 지정된 발급 기관에 나오셔야 합니다. 신청서를 차량국(DMV)으로 발송하지 마십시오. DMV는 주차증을 발급하지 않습니다. 만약 뉴욕주 DMV에서 발급한 운전면허증이나 비운전자 ID를 가지고 있는 경우, 반드시 발급 기관에 해당 문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발급 기관에서는 주차증에 운전면허증이나 비운전자 ID카드에 인쇄되어 있는 9자리 숫자 중 마지막 3자리를 기입하여 경찰이 실제 주차증 소지자를 쉽게 식별하고 주차증 오용을 제한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뉴욕 시민이 아닌 경우 허가증을 받기 위해 운전면허증 또는 뉴욕 주 차량국(NYS DMV)에서 발급받은 운전면허증 외 신분증을 소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허가증은 아래에 설명된 대로 허가증 신청서와 함께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 외 신분증의 사본 한 부를 제출하지 않은 뉴욕 시민에게는 발급되지 않습니다).

뉴욕시 거주자 - 뉴욕 시 교통부(NYC DOT)에서는 뉴욕 시민에게 허가증을 발급합니다. 허가증을 필요로 하는 뉴욕 시민은 신청서 및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 외 신분증의 사본 한 부를 뉴욕 시 교통부(NYC DOT)의 허가증 및 고객 서비스 부서(30-30 Thomson Ave, 2nd Floor, Long Island, NY 11101-3045)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718) 433-3100번으로 전화 문의하십시오. **신청서와 함께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 외 신분증의 사본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뉴욕 시 교통부(NYC DOT)는 허가증을 발급해 드리지 않습니다**. 중증 장애인용 번호판 소지자는 파트 1을 작성하고 등록서 사본을 첨부하십시오. 중증 장애인용 맞춤 번호판 소지자는 장애인 심볼(International Symbol of Access)이 보이는 번호판 사진을 첨부해 주십시오. 2페이지에 있는 “뉴욕시 내 주차” 관련 중요한 정보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나소 카운티 거주자 - (516) 227-7399번(나소 카운티 신체장애사무국(Office of the Physically Challenged))으로 전화하여 주차증 신청처를 문의하십시오.

기타 뉴욕주 거주자 - 거주하는 곳의 시청, 타운 또는 마을 회관에 전화하여 가장 가까운 주차증 발급 기관이 어디인지 문의하십시오. 대부분 시청, 타운, 마을 서기 및 일부 경찰서에서 주차증을 발급합니다. 발급 기관 대부분은 양식 MV-664.1을 취급하나 일부 기관은 자체 양식이 있을 수 있으며, 모든 기관이 전부 일시 장애용 주차증을 발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2) 번호판 신청 방법:

- (a) 반드시 영구 장애에만 해당합니다.
- (b) 특별 번호판이 사용될 차량은 반드시 장애를 가진 당사자에게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본인 이름으로 차량을 등록하려면 16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 (c) 3페이지에 있는 신청서의 파트 1을 작성하십시오. 의학 박사, 정골의학의, 의사 보조(PA), 전문 간호사(Nurse Practitioner), 족부의학의(발 관련 장애용) 또는 검안의(맹인용)에게 본 신청서 양식 파트 2의 “영구 장애” 섹션을 작성하도록 후 **양식을 돌려 받으십시오**. 참고: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명확한 장애이거나 (예: 다리의 절단) **또는 장애인용 영구(청색) 주차증**을 소지한 경우, 차량국 사무소에서 의학 증명을 면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주차증 소지자는 주차증을 지참하여야 하며, 또한 신청서 파트 1을 작성한 후 의학 증명 또는 의사 소견서가 보이는 주차증 신청서 사본을 첨부하십시오.
- (d) **번호판은 아무 차량국 사무소에서나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완전히 작성한 신청서를 지참해 주십시오.
 - 차량을 처음 등록할 때에는 최초 등록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제공하여야 하며 여기에는 장애 증빙서류도 포함됩니다.
 - 번호판이 차량에 부착되어 있는 경우, 이 번호판을 지참하고 오셔서 중증 장애인용 번호판과 교환하십시오. 등록 신청서(양식 MV-82)를 작성한 후 장애인 심볼(International Symbol of Access, ISA)이 보이는 새 번호판 비용 \$25.00를 납부하십시오.
 - 차량 등록 갱신이 아닌 경우, 본 절차를 위해 추가로 \$3.75를 납부해야 합니다.
 - ISA 심볼이 있는 개별 맞춤 번호판은 DMV 맞춤 번호판 사무소(Custom Plates office)에서 처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518) 402-4838번으로 문의하십시오.

번호판 및 주차증 사용하기

- ◆ 해당 번호판과 주차증은 장애를 가진 당사자가 동승하거나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에만 장애인용 주차 구역에 주차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이 아닌 사람이 이 주차증이나 특별 번호판을 사용해 장애인용 주차 구역에 주차할 수 없습니다. 이 주차 구역에 불법으로 주차하는 경우, 뉴욕주 차량 및 교통법 섹션 1203-c(4) 위반으로 최초 위반 시 \$50 ~ \$75의 벌금형, 2년 이내 2차 위반 시 \$75 ~ \$150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지방 자치 당국에서는 더 높은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용 주차증이나 번호판을 오남용하는 경우, 해당 주차증이나 번호판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 ◆ 차량을 주차할 경우에는 주차증을 백미러에 걸어두어야 하나, 차량을 주행할 때에는 백미러에서 내려서 걸려있지 않도록 합니다.
- ◆ 일반적으로 이 번호판과 주차증은 뉴욕주 전역의 장애인을 위한 주차 구역이 따로 마련되어 있는 곳에서 모두 유효합니다. 그러나 이 번호판 또는 주차증을 사용한다고 해서 뉴욕주나 지역의 주차 규정 또는 요금, 또는 지정 장소에 주차하기 위한 자격 요건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번호판과 주차증은 또한 다른 주, 준주, 국가에서도 대부분 유효합니다. 뉴욕주 이외 지역을 여행할 때에는 해당 지역의 경찰이나 차량국에 문의하여 이 주차증이나 번호판을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 ◆ 장애인을 위해 따로 마련된 주차 구역은 반드시 눈에 띄고 영구적으로 설치된 지상 표지판에 휠체어 심볼을 삽입하여 표시해야 합니다. 또한 이 표지판은 주차 공간 표면 위 5 ~ 7피트 높이에 위치해야 합니다. 선과 표시를 청색으로 칠하여 지정 주차 구역임을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이 주차증이나 번호판을 소지한 경우라도 장애인용 주차 구역 옆에 표시된 진입로에 주차하지 마십시오. 진입로는 휠체어와 기타 특수 장비가 있는 차량을 이용하는 사람이 본인의 차량을 안전하게 드나들기 위해 제공된 공간입니다.
- ◆ 각 지역별로 현지 법령에 따라 장애인용 주차 구역을 지정합니다. 특정 도로의 장애인용 주차 구역에 관해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 도로를 관할하는 당국에 연락하십시오. 공공도로를 벗어난 주차장이 있는 시설의 주차 구역에 관해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 시설 관리자나 건물 검사관(building inspector)에 연락하십시오.

◆ 뉴욕시 내 주차

뉴욕시(New York City, NYC)는 도로 상에 장애인용 주차 공간을 별도로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시에서는 중증장애인에게 시 허가증(직사각형 계기판 허가증)을 발급하며 해당 허가증으로써 대부분의 차량은 이용할 수 없는 차도 변 공간에 주차가 가능하며, 법적 미터기 설치구간에 무료로 주차하실 수 있습니다. 이 허가증은 뉴욕시 밖에서는 유효하지 않습니다. 뉴욕시 교통부(NYC DOT)가 발급한 시 허가증과 뉴욕주 허가증을 모두 소지하실 수 있습니다.

뉴욕주와 뉴욕시 전역의 쇼핑센터, 쇼핑몰, 사무실 건물, 아파트 건물, 대학 캠퍼스 주차장의 지정 주차구역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특별 번호판 또는 주 허가증을 이용해 이같은 공공도로 외 공간의 지정 구역에 주차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 또는 허가증 신청서를 원하시면 뉴욕시 교통부(NYC DOT) 웹사이트(www.nyc.gov/dot)를 방문하시거나 (718) 433-3100번으로 전화 문의하십시오. 뉴욕시 교통부(NYC DOT)에 우편으로 문의하셔도 됩니다. 주소:

NYC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Permits and Customer Service
30-30 Thomson Avenue, 2nd Floor
Long Island City, NY 11101-3045

◆ 미터기 주차 면제

주차 미터기에 접근하거나 이를 이용하기 어려운 이동 관련 장애 및 특정 중증 장애를 가진 경우, 미터기 주차 면제 자격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미터기 주차비 납부 면제증 소지자는 뉴욕주 내 모든 도시, 시내 또는 마을에서(뉴욕시는 제외) 주차미터기가 설치된 주차구역에서 무료로 주차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양식 MV-664.1MP(중증 장애인용 미터기 주차 면제 신청서) 및 MV-664.2MP(미터기 주차 면제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상기 양식은 지역별 발급 기관을 통해 입수할 수 있으며 DMV 웹사이트 dmv.ny.gov에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왼쪽의
구멍을 따라 잘라낸 후
1 과 2페이지는
참고용으로 보관하십시오.



Department of
Motor Vehicles

중증 장애인용 주차증 또는 번호판 신청서

본 패킷의 1, 2페이지를 읽은 후 본 신청서를 작성하십시오. 주차증 신청의 경우, 작성한 신청서를 거주하는 시, 타운 또는 마을의 발급 기관(지역별 자치 기관)에 직접 가져가십시오. 차량국으로 신청서를 발송하지 마십시오. **DMV에서는 주차증을 발급하지 않습니다.**

파트 1 장애 당사자에 관한 정보—(화살표 옆에 서명해 주십시오.)

성	이름	중간 이니셜	전화번호 ()
주소: 번지와 도로 이름	아파트 호수	시	주 우편번호

생년월일 남 여 신청 항목: 번호판 (DMV에 신청) 주차증 (거주지역 발급 기관에 신청)

장애인용 번호판을 소지하고 계십니까?
 예 - 번호판 번호: _____ 아니요

뉴욕 시민 -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 외 신분증의 사본 한 부를 첨부하십시오. 뉴욕 주 허가증을 소지하신 적이 있는 경우 여기에 허가증 번호를 정자체로 기재하십시오.

4페이지의 참고 사항을 읽고 서명하십시오.
 → _____ (날짜)
 (장애 당사자 서명 또는 부모 또는 보호자 서명) - 부모나 보호자가 서명하는 경우, 서명 후 장애 당사자와의 관계를 적어 주십시오.

파트 2 의학 증명(MEDICAL CERTIFICATION)

참고: 영구 장애는 의학 박사(MD), 정골의학의(DO), 의사 보조(PA), 전문 간호사(NP), 족부의학의(DPM, 발 관련 장애인) 또는 검안의(OD, 맹인용)가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시 장애는 오직 의학 박사 또는 정골의학의만 증명할 수 있습니다.

해당하는 장애를 나타내는 상자에 체크하고(복수 선택 가능) 진단 내용을 기입하십시오.

일시 장애: 일시 장애인이란 일시적으로 보조 장비의 도움 없이 이동하기 어려운 사람을 말합니다. 보조 장비는 예를 들어 교정 장치(브레이스), 지팡이, 목발, 인공 기관, 타인, 휠체어, 보행기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중요사항:** 임시 주차증은 예상 회복 날짜와 상관없이 6개월 이하로만 발급됩니다.

예상 회복 날짜: _____ 진단 내용: _____

필요한 보조 장비는? _____

영구 장애: “중증 장애인”이란 아래에 열거되어 있는 바와 같이, 이동을 제한하는 1개 이상의 영구적인 손상, 장애 또는 상태를 지닌 사람을 말합니다.

진단 내용: _____ 해당되는 상태에 체크해 주십시오.

휴대용 산소를 사용 법적 맹인 하나 또는 양 다리의 제한적 사용 또는 불능 멈추지 않고 200피트를 걷지 못함

이동을 심각하게 제한하는 신경근 장애 III 또는 IV 등급 심장 질환 (미국심장협회 기준)

관절염, 신경 또는 정형외과적 질환으로 인한 걷기 능력의 심각한 제한

폐활량 측정 시 1초간 노력성 호기량(FEV1)이 1리터 미만, 또는 동맥 산소 분압이 휴식 시 실내 공기의 60mm/hg 수준으로 심각한 폐질환에 해당하는 경우

상기에 열거되어 있지 않으나 이에 상응하는 장애를 구성하며, 대중교통 이용 시 흔치 않은 곤란을 초래하고 어려움 없이 외출과 이동을 할 수 없게 하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손상 또는 상태

이러한 장애가 어떻게 기능적 이동성을 제한하는지 설명하십시오.

MD/DO/DPM/NP/PA/OD 이름	전문면허증(Professional License) 번호
MD/DO/DPM/NP/PA/OD 주소	전화번호 ()

4페이지의 참고 사항을 읽고 서명하십시오.
 → _____ (날짜)
 (MD/DO/DPM/NP/PA/OD 서명)

Part 3 FILE INFORMATION (For Issuing Agent Use Only)

Blue Red **Parking Permit No.** _____ Date Issued: _____ Date Expires: _____

First Second 9-digit number from NYS Driver License/ID Card _____

Denied Revoked Reason: _____ (Date)

→ _____ (Issuing Agent) _____ (Locality)



고객 및 의료 전문가 참고 사항

뉴욕주 차량교통법 및 형법에 의하면 중증 장애인용 주차증 또는 번호판 신청서에 거짓 진술을 하거나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범죄(중범죄 또는 경범죄)입니다. 이러한 범죄는 벌금형, 징역형 또는 두 가지 모두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범죄가 주차증 신청과 관련된 경우, 민사 처벌로 \$250 ~ \$1,000의 벌금을 지불할 책무까지 지게될 수 있습니다.

장애인용 번호판 또는 주차증을 신청하는 고객을 위한 안내 사항

본 신청서의 파트 1에 서명하는 것은

- 본 신청서에 제공하는 정보는 사실이고,
- 2페이지에 기술되어 있는 “번호판 및 주차증 사용하기”의 조건을 읽었고 이해하며,
- 해당 조건을 준수하기로 동의한다고 확인하는 것입니다.

장애인용 번호판 또는 주차증 신청서를 증빙하는 의학 정보를 제공하는 의료 전문가를 위한 안내 사항

본 신청서의 파트 2에 서명하는 것은

- 귀하가 제공하는 의학 정보가 사실이며 완전하고,
- 귀하의 의견으로는 본 신청서의 파트 1에 나와 있는 이름의 당사자가 의학적으로 파트 2에 명시되어 있는 의학적 기준에 따라 장애인용 번호판 또는 주차증을 발급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